##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덕흠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8694

발의연월일: 2025. 3. 6.

발 의 자: 박덕흠 • 이헌승 • 고동진

김성원 · 최은석 · 김소희

윤영석 · 김민전 · 엄태영

김장겸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체육시설을 운영하는 체육시설업 자는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00만원 이하 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체육지도자가 영업시간 내내 배치되어 있지 않아 안전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며,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지 않더라도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에 그치고 있어 체육지도자 배치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음.

이에 체육시설업자가 체육지도자를 영업시간 동안 상시 배치하여야 함을 명확히 하고, 체육지도자 배치 의무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 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체육시설 이용에 따른 사고 를 예방하고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1항, 제38 조제2항제2호 신설 등).

#### 법률 제 호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 중 "배치하여야"를 "영업시간 동안 상시 배치하여야"로한다.

제38조제2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3호 및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제23조에 따른 체육지도자를 영업시간 동안 상시 배치하지 아니하거나 체육지도자 자격이 없는 자를 배치한 자제40조제1항제3호를 삭제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3조(체육지도자의 배치) ① 체	제23조(체육지도자의 배치) ①		
육시설업자는 문화체육관광부			
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			
의 체육시설에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업시간 동안 상시 배치하여야-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8조(벌칙) ① (생 략)	제38조(벌칙) ①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②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			
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u>.</u>		
1.・1의2. (생 략)	1. • 1의2. (현행과 같음)		
<u>&lt;신 설&gt;</u>	2. 제23조에 따른 체육지도자를		
	영업시간 동안 상시 배치하지		
	아니하거나 체육지도자 자격		
	이 없는 자를 배치한 자		
<u>2.·3.</u> (생 략)	<u>3.·4.</u> (현행 제2호 및 제3호와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4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제40조(과태료) ①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2. (생략)
- 3. 제23조에 따른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지 아니하거나 체육지

   도자 자격이 없는 자를 배치

   한 자

4. ~ 6. (생 략)

②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삭 제>

4. ~ 6.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